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150호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투자병행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 (투자병행형)』에 참여할 도약기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4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 (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 K-Startup 누리집 고객센터 온라인매뉴얼 일반매뉴얼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본 공고는 <u>2024년 창업도약패키지(투자병행형)</u>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하는 공고문입니다.

- ①대기업 협업형(모집마감), ②일반형, ③투자병행, ④융자병행, 4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공고하며, 상기 ①~④중 1개의 유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①대기업 협업형'에 신청을 완료한 경우, ②~④번 유형에 신청 불가
- ①대기업 협업형, ②일반형, ④융자병행에 <u>'작성중'인 경우</u>에는 '③투자병행'에 신청·제출 완료가 불가하니 반드시 **사전에 타 유형을** 「<u>접수 취소</u>」 해야 해당 유형에 신청 가능 * K-스타트업 누리집→사업신청내역조회→창업도약패키지 타 유형 접수취소→해당 유형 신청
- '기업' 또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상기 유형 간 중복 신청한 경우, 해당 유형 중 최종 '접수 완료' 시간이 빠른 유형으로 평가 진행 예정

< '24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및 규모(안) >

유형	① 대기업 협업	② 일반형	②-1 성공환원형	③ 투자병행	④ 융자병행
지 원 금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사업화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사업화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 <u>추가 사업화자금</u> *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 투자 연계**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 융자 연계
프로	대기업 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선정	100개사 내외	233개사 내외	일반형 233개 사 중 선정	20개사 내외	20개사 내외
모집	모집마감	'24.2.27.(화) ~ 3.19.(화) 16시			

- * ②-1 성공환원형은 '일반형 선정기업' 중 희망기업에 한하여 추가 사업화자금 지원 다. 협약종료 후 성공판정 기업은 추가지원금의 일부를 환원(반납)해야 함
- ** ③ <u>투자병행형</u>은 보조(사업화자금)에 1:1 매칭하여 'SAFE' 방식(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예정

1 모집공고 개요

- □ **사업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 □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인 법인기업(개인사업자는 신청 불가)
 - * 단, 전문투자기관(벤처투자회사, LLC, 신기사, PEF) 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이 없어야 함
- □ 선정규모: 20개사 내외
- □ 지원내용: 보조(사업화자금)과 투자(투자금)유치를 동시 지원

< 창업도약패키지(투자병행) 지원 개요 >

	(8 B = 7 = 1 (1 (1 (1 (0 6))) E (1 m)				
	구분	①보조 (사업화자금)	②투자(투자금)		
운	영기관	• 창업진흥원 (이하 창진원)	• 한국벤처투자 (이하 KVIC)		
	용도	• 사업모델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사업화 소요 비용(인건비, 외주용역비 등)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운영자금 등 사 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방식	직접 지원	직접 투자		
자	집행 방식	•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 사업화지원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을 준용하여 사업비 집행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및 한국벤처투자 내규에 따라투자금 집행		
금지	지원 금액 결정	• 창진원(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 KVIC 투자심의위원회		
원	지원 한도	• 보조(사업화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최대 2억원 (평균 1.3억원)	• 투자금 최대 2억원 (평균 1.3억원) * 보조(사업화자금)에 1:1 매칭하여 'SAFE' 방식(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예정		
	기업 부담분	자기부담사업비 * 총사업비(정부지원사업비+자기부담사업비)의 30%(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해당 없음		
프	로그램	•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확대 지원 등	• 해당 없음		
지	원기간	• (협약) 10개월 내외	• (계약) 투자금 회수 시까지		
문의처		• (시스템) 국번없이 1357 • (보조지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31-780-9085, 031-780-9084, 031-780-9082)	• (KVIC) 02-2156-2486		
신청접수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누리집 (www.k * 투자 관련 신청접수 절차는 발표평가 통과			

□ 보조(사업화자금)와 투자(투자금) 지원 절차

- ① (신청·접수)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
- ② (서류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등을 평가
- ③ (발표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등을 평가, 보조(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기업 및 정부지원사업비 확정
 -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대표자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④ (투자실사 대상자 추천) 발표평가 통과자를 KVIC 투자실사 대상자로 추천, 해당기업은 KVIC에 투자 신청 관련 필요 서류* 접수
 - * KVIC에서 투자실사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 요청 및 관련 안내 예정
 - ** 발표평가 통과자가 투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화자금) 지원 불가
- ⑤ (투자실사) KVIC 및 회계법인이 투자대상자 현장실사를 통해 투자 적격 여부 확인, 기업 인터뷰 및 심사보고서 작성
 - * SAFE 투자계약(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위해서는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투자 실사 전 주주동의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투자 불가
- ⑥ (투자심사)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투자대상 여부 및 투자금 확정
 - * 서류·발표평가 및 투자실사·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화자금)와 투자(투자금)를 동시 또는 일부만 지원할 수 있음

< 창업도약패키지(투자병행) 전체 지원절차 >



* 상기 절차 및 순서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온라인 사업설명회

- 개최일정(안): '24.3.7.(목) 14시 ~
 - *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일반형, 투자병행, 융자병행 유형을 순서대로 안내 예정
- 접속링크: https://www.youtube.com/c/창업진흥원kised
 - *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 □ 현장 사업설명회 (보조, 투자 지원에 대한 현장 질의·답변)

사업설명회 일정	사업설명회 장소	운영기관
'24.3.6.(수) 13시~	기업지원허브 창업존 6층 대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815, 기업지원허브 창업존 6층 대회의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KVIC

* 현장 사업설명회 문의처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31-780-9085, 031-780-9084, 031-780-9082

2 세부 지원계획

※ 보조(사업화자금) 지원 관련 사항은 4~19쪽,투자(투자금) 지원 관련 사항은 20~21쪽 참고

□ 보조(사업화자금) 지원

- □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법인기업(도약기 창업기업)
 - * 공고일 기준 3년 초과 7년 이내('17년 2월 27일 ~ '21년 2월 26일) 창업기업
- □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 ('24.5월~'25.2월 예정)

□ 선정규모 : 20개사 내외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 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억원(평균 1.3억원) 지원
주관기관 창업프로그램	• 후속 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주관기관의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신청자격 : 도약기 창업기업 중 법인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 ▶ 신청가능 업력 : <u>2017년 2월 27일 ~ 2021년 2월 26일</u>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 ☞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경우
 - ☞ 창업여부 기준표([붙임 1-1])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 ☞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 <u>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u> 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신청 제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 ① 조건 예외 대상 >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u>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u>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 창업중심 대학(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도 신청 제외 대상임

-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22년 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으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단,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및 '글로벌'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붙임 1-3] 참고

-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⑦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⑨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 ②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최대 2억원 (평	균 1.3억원 내외) 기	디원 -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 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 에서 지급					
	• 총 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물은 창업기	,		20% 이하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사업화		< 총시	나업비 구성 >				
자금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	기부담사업비			
	S*1 B =1	01112118-1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사업비 1.5억원인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3121	01112121	현금	현물			
	215백만원	150백만원	22백만원	43백만원			
	100%	69.8%	10.2%	20.0%			
	• (주관기관 프로그	1램) 후속투자 유치	지, 글로벌시장 진출·혹	탁대 지원			
	구분	세부내용					
창업	후속투자 유치	투자단계 및 산업군별 IR 운영, 투자 애로 상담회 운영, IPO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등					
프로그램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	글로벌 선행기술조사 지원,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글로벌 투자 사 연계 투자 IR 운영,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	•	지원, 네트워킹 등 주관· ·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			

□ 신청·접수 기간: '24. 2. 27. (화)~3. 19. (화) 16:00까지

< 신청·접수 유의 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u>마감일 2~3일 이전에</u>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수정 가능)
 -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유형 변경 불가) 단,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 마감일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접수 마감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내용** 변경·삭제 불가
- ④ 신청·접수 마감시간까지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과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 실명인증: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 기업인증: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사업화지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신청방법 유의 사항 >

- ① 사업 신청은 <u>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접수</u>하여야 하며, <u>타인이 신청·접수하는 경우 탈락 처리</u>
- ② 사업 <u>신청·접수</u> 시, 창업도약패키지 **공고 유형 중 1개를 선택**하여 해당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해야 함(신청·접수 **마감시간 이후 유형 변경 불가**)
- * 동 사업 공고는 창업도약패키지(투자병행형) 공고이며 투자병행형 사업계획서 양식에 작성 및 K-Startup 누리집 투자병행형 공고에 사업계획서를 업로드 해야 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본 공고문에 첨부된 **투자병행형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해당 시) 공동·각자대표 동의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 지원 절차 * 선정평가 운영, 일정, 결과 등은 <u>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u>

< 보조(사업화자금) 지원 절차 >



신청기업에 대한 '보조(사업화자금)'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①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으로 신청자격 상시 검토
- ②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기업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서류 및 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팀(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평가위원회에서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 평가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도약기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별도 추가 안내)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창업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표평가 및 협약 대상에서 제외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는 KVIC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전문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이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함
- ③ (발표평가)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④ (보조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
 -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하되, 창업기업의 신청금액을 넘지않는 금액으로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서류 및 발표평가(4월~ 5월) → 선정 및 사업비 배정, 협약(5월) →
 사업 수행('24.5월~'25.2월) → 최종평가('25.4월)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홍원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 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 체결) 불가. 단, '23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주의) 2개 이상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동 사업 신청자는 '24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 또는 기타 선정평가 관련 심의위원으로 참여 불가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표 평가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대응하여야 하며, 대표자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 서류평가, 발표평가 관련 사항은 주관기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의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 확인하여 요건 불 충족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 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항 외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대표자 변경 시 협약 취소 및 정부 지원사업비 환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창업진흥원 또는 주관기관이 취하는 연락에 선정자가 응하지 않는 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 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 하여야 함
 -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 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업에 최종 선정되더라도,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 또는 협약체결 이후에 투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화자금) 지원도 취소·제재될 수 있음
 - * 단, 대표자의 사망·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기사항 관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등은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별도 안내되는 기한('24.5월 예정)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음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u>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u>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화 지원 문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31-780-9085, 031-780-9084, 031-780-9082)
- ※ 상기 문의처는 보조(사업화자금) 지원에 한하며, 투자 지원 내용은 KVIC 담당자 문의처 02-2156-2486으로 연락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 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1

창업 여부 기준표 (법인기업용)

※개인기업은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투자병행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에 신청 불가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기는 개인자립자 폐업	<u> </u>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법인기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0008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기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되시청네 단정	-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차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붙임 1-2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_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1-3

2024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TIPS 내역사업 중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사업 일체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2	·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5	·아기유니콘 200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6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7	•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8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9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0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1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DATA-Sta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에코스타트업 지원	환경부
1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환경부
14	·물드림 사업화 지원	환경부
15	·예술기업 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6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7	·스포츠산업 창업중기(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8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9	·콘텐츠 초기창업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	·콘텐츠 창업도약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1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콘텐츠 오픈이노베이션)	문화체육관광부
22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3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4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5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26	·농식품 벤처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7	·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28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② 투자 지원

- □ **지원대상**: 본 공고 상의 보조(사업화자금) 지원 발표평가를 통과하여 창업진흥원의 추천을 받은 법인기업
 - * 전문투자기관(벤처투자회사, LLC, 신기사, PEF) 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없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개인사업자는 제외)

□ 투자 세부사항

구분	세부 사항
운용방향	• '24년 창업도약패키지(투자병행형) 발표평가 통과기업을 창업진
E008	흥원이 추천, 해당 기업을 심사하여 매칭(1:1)투자 실시
업무집행조합원	• 한국벤처투자
조성형태	• 벤처투자조합(벤처투자법 제 50조)
투자금액	• '24년 창업도약패키지 보조금(사업화자금)의 1배수
투자방식	• SAFE 방식 투자
	• 할인율* 방식을 채택
투자방법	* 10억 원 이상의 후속투자 시 기업가치평가 금액(Pre-value)에
	할인율(10%)을 적용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지분 산정
71047171	• 담당 심사역의 투자업체 지속 관리, 주요 경영성과 정기 검토,
기업관리	기타 상시 모니터링 등

□ 투자 제외대상(결격사유)

NO.		투자 결격 사유		
1	전문	투자기관(벤처투자회사, LLC, 신기사, PEF)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 ⁽	이 있는 경우	
2	자본	금 미납, 가장납입, 차명거래 등이 있는 경우		
3	최대	주주, 30% 이상 보유 주주 등의 피소가 있는 경우		
4	특수관	관계인(임원,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 거래가 있는 경우		
5	대표여	기사가 실질 경영권(최대주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6	금융기	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7	국세/	지방세/공과금 체납 또는 직원 급여 체불이 있는 경우		
	다음의 투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NQ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8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_	

□ 투자 절차

< 투자(투자금) 지원 절차 >



- * 상기 일정은 투자지원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① (투자기업 추천) 창업도약패키지(투자병행형) 발표평가 통과자 추천 (창업진흥원→KVIC)
- ② (서류접수) 투자유치신청서 접수 및 투자 요건 검토 (KVIC)
- ③ (투자기업 실사) KVIC 및 회계법인이 추천기업의 현장실사를 통해 투자 적격 확인, 기업 인터뷰 및 심사보고서 작성
- 4 (투자심의위원회) 최종 심사 및 투자의사, 투자금 결정
- **⑤** (투자계약 및 투자집행) 투자대상 선정 후 3개월 내 투자계약
- (사후관리) 담당 심사역의 투자업체 지속 관리, 주요 경영성과 정기 검토, 기타 상시 모니터링 등

□ 투자 관련 문의처

- (문의처) KVIC 담당자 02-2156-2486
- ※ 상기 문의처는 투자 관련사항에 한하며,
 보조(사업화자금) 지원 내용은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 연락(031-780-9085, 031-780-9084, 031-780-9082)